###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5

제출년월일 : 2002. 7. 1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우리구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수 준 높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함(안 제2조)
- 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1)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광고물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광고물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써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5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령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조례 포함)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2)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라.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안 제8조 내지 제9조)
- 마.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 동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고,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안 제11조)
- 바. 영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5 내지 별표6에 의하며,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사.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또는 시민생활환 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안 제1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 3)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지시공문 : 서울시행정13670-636(2002. 2. 8)호의 서울특별시자치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정표준안 통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

-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시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구청장은 연립간판(2 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그 게시시설이 설치될 토지·건물 등의 수유자·관리자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 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써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 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③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 조례를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가로형간판 · 세로형간판
  - 나. 세로 5미터 이상의 돌출간판
  - 다.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 라.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 한다)
  - 마,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 게시시설
  - 바.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사.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③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 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 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 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한 경우를 제외 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 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1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 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 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⑤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 며,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타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 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 장에게 교육위탁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 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대표자 성명 · 주소 ·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 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 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 제11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 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이 경우 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되 거나 허가 ·신고하는 광고물 등
- ④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 표5에 의한다.
  -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 기준은 별표6에 의한다.
  -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14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반환) 영 제4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관한 광고물 등(매

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15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 ⑤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 시할 수 있다.
  -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별표1]

#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9조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비고
신규 교육	8시간	<ul> <li>관계법규 - 4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li> <li>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li> <li>종사자의 자세 - 1시간</li> </ul>	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	시하는 교육을 받 아야 함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4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법에 의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 교육	4시간	o 관계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 시 실시
기타 교육	별도로 정 함	<ul><li>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히</li></ul>		

[별표2]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11조 관련)

·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 위	기 준	수 수 료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간판	개	6제곱미터이하	4,000
(가로형·세로형간판)	m²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나.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개	5제곱미터이하	5,000
의 판류형간판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영 제15조제4호)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40,000
(8 4133443)	-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m²		•
2. 돌출간판	개	1제곱미터이하	10,000
ㅇ 이 · 미용업소표지 등 및	개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이하	20,000
의료기관·약국표지 등	개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30,000
	m²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5,000
		것에 한함)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개	   해당광고물(벽면, 지주)에 준함	5,000
나. 내용변경	^ II	에 6 '6 '로 글 (국 전, 기 1 ) 개 전 급	5,000
다. 대중단경			
4.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5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100,000
	개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200,000
	m²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1제곱미터이하	5,000
	개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10,000
	.,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m²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2,000
	m²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0.4 = 41 =	111	10개요기기원 소리에는 단기	4,000
6.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지주간판에 준함	20,000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이하	3,000
, , , , , , , , , , , , , , , , , , , ,	m²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20개 이하	15,000
,	: 4	20개초과 매20개까지 가산	10,000
			•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개	5제곱미터이하	15,000
5, - 0 1E(:1:14/1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500,000
나. 열차·자동차·선박·	대	1.5제곱미터이하	2,000
항공기	$m^2$	5제곱미터초과를 초과하는 면적	2,000
10. 선전판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 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개	20제곱미터이하	20,000
	$m^2$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000
나. 지주이용 현수막	개		2,000
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개		10,000
라. 현수막 게시시설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14. 벽보		20매 이 하	5,000
	매	20매초과 50매이하	10,000
		50매초과 매50매까지 가산	10,000
15. 전단	매	매 1,000매까지	5,000
16.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가. 신규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나. 기간연장, 변경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17. 주소·성명 등 변경	건		5,000
(영 제9조제2항)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30,000
19. 기타 광고물			
가. 차량답재 영상광고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나.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다. 깃발이용광고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라. 기타 종류의 광고물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 수수료의 계산방법

-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 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 (4)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액 전액을 징수한다.
-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7)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별표3]

### 옥외광고물 등안전검사 수수료(제9조 관련)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영 제23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4미터 이상의 게시시 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 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 마다 가산	22,000 45,000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 간판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 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 마다 가산	15,000 22,000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4 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 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 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 마다 가산	15,000 22,000 1,500
4.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 터이하 연면적 8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 마다 가산	22,000 45,000 2,000
5. 기타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 수수료의 산정방법

-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중 백열등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각선을 기준으로함).
-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2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 【별표4】

###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제11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관 런 법 규
신	규	업 소 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 소 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영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중 관할구역 안에서 주소 를 변경한 때와 업소명을 변경한 때의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별표5]

###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부과 기준(제12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8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0.8제곱미터미만	13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19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2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3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4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6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7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8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79만원+3제곱미터 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5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7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9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1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2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2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5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49만원+3제곱미터초과면적
	0.5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위	반	사	항		과	태	豆	금	액	
나. 현수막										
(1) 표시면적에 ㅁ	다른 부과기	[준								
· 면적 1.0제급	급미터미만				5만원					
· 면적 1.0제급	급미터이상	2.0제곱	미터미만		7만원					
· 면적 2.0제급	곱미터이상	3.0제곱	미터미만		9만원					
· 면적 3.0제급	라미터이상	3.7제곱	미터미만		13만원					
· 면적 3.7제급	라미터이상	4.4제곱	미터미만		15만원					
· 면적 4.4제급	라미터이상	5.0제곱	미터미만		19만원					
· 면적 5.0제급	라미터이상	6.0제곱	미터미만		25만원					
· 면적 6.0제급	라미터이상	8.0제곱	미터미만		35만원					
· 면적 8.0제급	마터이상	10.0제급	구미터미만		45만원					
· 면적 10.0제	곱미터				50만원					
· 면적 10.0제	곱미터초고	ŀ			49만원 +	10.0제	미곱미티	네 초과	·면적	
					1제곱미1	터당 1	0만원	가산		
(2) (1) <b>의</b> 현수막을 보행을 현저			행이나 일반역	신의	해당 과태	채료 금	<b>삼</b> 액의 :	2배 적	용	
다. 벽 보										
(1) 일반 광고내용	<del>3</del> .									
· 1~10장					장당	1만원	<u>]</u>			
· 11~20장					장당 1민	· 5천원	1			
· 21장 이상					장당 2민	5천원	1			
(2) 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	에 위반5	티는 광고내용	-						
· 1~10장					장당 1민	5천원	1			
· 11~20장					장당	2만원	Ī			
· 21장 이상					장당	3만원	j			
라. 전 단										
(1) 일반 광고내용	8-									
· 1~10장					장당	5천원	Ī			
· 11~20장					장당	1만원				
· 21장 이상					장당 1민	· 5천원	1			
(2) 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	에 위반5	티는 광고내용	-						
· 1~10장					장당 1민					
· 11~20장					장당	2만원	Ī			
· 21장 이상					장당	3만원	Ī			
2. 법 제12조 제2		에 위반히	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가. 연 1회 위					25만원					
나. 연 2회 위					45만원					
다. 연 3회이	상 위반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3>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표6]

#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제13조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액
1. 가로형 · 세로	└형·공연간판		
· 면적 2.0제	곱미터미만		20만원
· 면적 2.0제	곱미터이상 3.0제곱대	미터미만	30만원
· 면적 3.0제	곱미터이상 4.0제곱대	미터미만	40만원
· 면적 4.0제	곱미터이상 5.0제곱대	미터미만	45만원
· 면적 5.0제	곱미터이상 6.0제곱며	미터미만	55만원
· 면적 6.0제	곱미터이상 7.0제곱대	미터미만	65만원
· 면적 7.0제	곱미터이상 8.0제곱대	미터미만	75만원
· 면적 8.0제	곱미터이상 9.0제곱대	미터미만	85만원
· 면적 9.0제	곱미터이상 10.0제곱	미터미만	95만원
· 면적 10.0조	곱미터이상 12.0제 <sup>-</sup>	곱미터미만	110만원
· 면적 12.0조	곱미터이상 14.0제 <sup>-</sup>	곱미터미만	130만원
· 면적 14.0조	곱미터이상 16.0제 <sup>-</sup>	곱미터미만	145만원
· 면적 16.0조	곱미터이상 18.0제 <sup>-</sup>	곱미터미만	165만원
· 면적 18.0제	곱미터이상 20.0제 <sup>-</sup>	곱미터미만	185만원
· 면적 20.0제	<b>  곱미터</b>		200만원
· 면적 20.0제	<b>  곱미터초</b> 과		199만원+2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2. 돌출간판			
· 면적 2.0제	곱미터미만		20만원
· 면적 2.0제	곱미터이상 3.0제곱다	미터미만	30만원
· 면적 3.0제	곱미터이상 4.0제곱다	미터미만	40만원
· 면적 4.0제	곱미터이상 5.0제곱다	미터미만	49만원
· 면적 5.0제	곱미터이상 6.0제곱다	미터미만	55만원
· 면적 6.0제	곱미터이상 7.0제곱대	미터미만	65만원
· 면적 7.0제	곱미터이상 8.0제곱다	미터미만	75만원
· 면적 8.0제	곱미터이상 9.0제곱대	기터미만	85만원
	곱미터이상 9.0제곱더 곱미터이상 10.0제곱	–	85만원 95만원
• 면적 9.0제		미터미만	
· 면적 9.0제 · 면적 10.0제	곱미터이상 10.0제곱	'미터미만 곱미터미만	95만원
· 면적 9.0제 · 면적 10.0제 · 면적 12.0제	곱미터이상 10.0제곱 메곱미터이상 12.0제	'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95만원 110만원
· 면적 9.0제 · 면적 10.0제 · 면적 12.0제 · 면적 14.0제	곱미터이상 10.0제곱   곱미터이상 12.0제   곱미터이상 14.0제	'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 면적 9.0제 · 면적 10.0제 · 면적 12.0제 · 면적 14.0제 · 면적 16.0제	곱미터이상 10.0제곱 세곱미터이상 12.0제 세곱미터이상 14.0제 세곱미터이상 16.0제	·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 면적 9.0제 · 면적 10.0제 · 면적 12.0제 · 면적 14.0제 · 면적 16.0제	곱미터이상 10.0제곱 메곱미터이상 12.0제 메곱미터이상 14.0제 메곱미터이상 16.0제 메곱미터이상 18.0제 메곱미터이상 20.0제	·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 면적 9.0제 · 면적 10.0% · 면적 12.0% · 면적 14.0% · 면적 16.0% · 면적 18.0%	곱미터이상 10.0제곱   곱미터이상 12.0제   곱미터이상 14.0제   곱미터이상 16.0제   곱미터이상 18.0제   곱미터이상 20.0제	·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곱미터미만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액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8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3.5제곱미터미만	55만원
·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4.5제곱미터미만	80만원
· 연면적 4.5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	20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
, , , , ,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4 이기하라 이기계 크린되지 기보되는 제트메르	
<ol> <li>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li> </ol>	
·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2.0세급미터이션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45년년 55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5.0제곱미터미만	210만원
· 연면적 2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	230만원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5.0제곱미터미만	245만원
· 연면적 35.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미만	260만원
·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 45.0제곱미터미만	280만원
· 연면적 4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	290만원
· 연면적 50.0제곱미터	300만원
· 연면적 50.0제곱미터초과	299만원 + 50.0제곱미터 초과면적
• 한단적 50.0세합니다으라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아취광고물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60만원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7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70만원 + 20.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100만원이하)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액
그 고즈세 파이트 세트바리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40-101
·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이상	80만원+3개초과
	1개당 5만원 가산(100만원 이하)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60만원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7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80만원+20.0제곱미터 초과면적
E E - 20.0/11   10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100만원이하)
	1개합기의 8 3년 년 기년(100년 년기학)
나. 교통안내소	일반 가로형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라. 영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시장이 인정한 공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25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36만원 + 15.0제곱미터 초과면적
· 현단기 10.0/제집 기어기 6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50만원 미만)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b>무인비행선</b>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만원+10.0제곱미터 초과면적
, , , , , ,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유인비행선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20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200만원 +10.0제곱미터 초과면적
CC   1000 4   1-1   10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나. 그 밖의 교통수단	х да да 1910 до се 2/1 с
·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10만원
· 연면적 1.0세곱미터미단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10만원 2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29만원
· 선면적 2.0세급미터이상 3.0세급미터미만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 , , , , , , , , , , , , , , , , ,	35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	50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초과	49만원 +5.0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υ. 스 뛰러 π정러 청 <b>고</b> 돌	/[포장 산천개 군밥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4>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광고	고주(옥외	광고업	자)				광고	2물 등	의 내용	<del>-</del>		관	<u></u> 리 :	자		
① 번 호	②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 업소 명	⑤ 전화 번호	⑥ 주소	⑦ 옥외 광고 업 신고 번호	⊗ 종 류	⑨ 수 량	① 규격	① 표시 위치	① 표시 기간		① 준공 일자	①5 성명	⑥ 주소	① 전화 번호	<ul><li>®</li><li>변경</li><li>사항</li></ul>	⑨ 비고
						<b>빈오</b>												

### <별지 제2호서식>

## 옥외광고업 신고(변경)대장

				대 표 자						
① 신3	② 2		4	⑤ 주민등	6	⑦ 영업장	⑧ 영업	⑨ 종업원	⑩ 변경	11)
번호	- 전3 도 년월	- 일 업소	명성명	록번호	주 소	소재지	내용	수	사항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3일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	③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r	⑤주 소	⑥신 고 번 호					
7	재교부신청 사유						
	서울특별시어	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के व				
و	위와 같이 옥외국	· 강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ਦ <b>ੇ</b> ਦੇ					
영 등 포 구 청 장 귀 하							
			수수료				
구기	비서류 : 없 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b>9</b> 01 71	처리기간	
숙되장	즉시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④신고 번호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신고구분		
⑦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신고사유		
	①성 명 ③업 소 명 ⑤영 업 장 소 재 지 ⑥신고구분 ⑦기 간	③업소명     ④신고 번호       ⑤영업장소재지     휴업(),재개업(),폐업()       ⑦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①

영 등 포 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개업시는 제외) 없 음

く 単 2	zÌ	제	5	ㅎ	서	시	`
<b>\</b> = .	^I	<b>∕</b> 111	. )	_Y_	$\sim$ 1	~~	_

제 호

### 옥외광고물 등의 교육수료증

①교육의 종류 ②교육년월일 ③교육시간 시간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수 豆 ⑥소 속 자 업체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구 청 장 (또는 교육위탁 실시자)

###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의 교육이수 대장

① 연번	② 교육의 종류	③ 교육년월일	④ 교육시간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업체명	⑧ 비 고

#### <별지 제7호서식>

제	<u></u> \$	처리기간			
	옥외	30일			
	①성 명	3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	③업 소 명 (단체·법인				
	④주 3	<u> </u>			
(5)	영업장 소재지		⑥전 화 <sup>1</sup>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기관·단체)의 소개서(보유시설·장비· 인력 등 포함)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물 등의 교육위탁지정서										
	①성 명			2	주민등록	번호				
수 탁 자	③업 소 명 (단체·법인)									
	④주 소									
5	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영 등 포 구 청 장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		HLƏL	ᅯ그	Lı
쐿고물	$\equiv$	누ㅏ호ㅏ	公士	ᇧ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③ 주 소 ④ 광고물 종류 ⑤ 수 량 ⑥ 규격 및 형태 ⑦ 표시내용

위의 광고물 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광고물 등 인수증

인 수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2 7 2	③ 주 소	
④ 광고물 종류	⑤ 수 량	
⑥ 규격 및 형태	⑦ 표시내용	
⑧ 매각한 광고물 등의 매각금액	원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